

CCIR 제 17 차 총회

ITU국 이 민 범



국제무선통신자문위원회(CCIR) 제17차 총회가 서독 뉘셀도르프에서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1일까지 개최되었다.

금번총회에는 75개국의 주관청, 32개의 RPOA, 15개의 국제기구 그리고 2개의 유엔 특별기구로부터 총525명이 참가하였는데, 한국에서는 체신부 전파관리국장을 수석 대표로 하여 총 21명이 참가하였다.

4년간의 연구활동 결과인 권고초안은 곧바로 전체회의인 본회의에 상정되어 검토, 승인 채택되지만, 기타 제반문제(연구단의 구조, 작업방법, 연구과제 분류, 기술협력 등)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토의케 하고, 그 결과 작성된 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어 검토, 승인채택된다. 따라서 총회에서 주요활동은 위원회 활동이라 하겠다. 금번 총회에서 조직된 위원회로는 조직, 업무계획, WARC-92, 93 준비, 기술협력 그리고 예산조정 5개 위원회가 있다. 그중 가장 회의도 많았고, 관심이 많았던 조직위원회에 대해 소개하기로 한다.

조직위원회 개요, 안건

조직위원회는 총회에서 구성하는 특별위원회중의 하나로서 CCIR의 조직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결의(Resolution)와 의견(Opinion)을 제·개정하는 일을 맡는다. 여기에서 제출된 안들은 총회에서 승인 채택되어 총회 종료후 1년 이내에 인쇄발간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금번 제17차 총회 조직위원회의 주요안건은 다음과 같다.

- CCIR 작업의 구성 및 작업방법
- CCIR Study Group 구조
- 총회와 총회사이 기간에 권고를 승인하는 방법
- CCIR 중요문제의 전략적 계획 회의
- CCIR 과 CCITT의 협력관계

- CCIR 과 IFRB 의 공동작업
- CCIR 과 다른 국제기구와의 연계
- CCIR 의 terms of reference

Working Group 구성

금번 총회의 조직위원회에서는 과거 20년간 존속되어왔던 Study Group 의 구조를 변경하는 일과 CCIR 의 작업의 구성 및 작업방법을 개정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어 이 두가지 일에 관련된 안건들의 경우는 원칙 및 표현방법을 합의하는데에 많은 시간이 소모되었고 잡다한 발언이 많았다.

총회 첫날 결정된 조직위원회 의장(C.L. Oliver)은 두가지 일을 주어진 기간내에 처리하기 위한 두개의 Working Group(WG) 을 구성하였다. (도표 참조)

표. Working Group 구성

WG A	의 장	R.D. Parlow (미국)
	처리안건	CCIR작업의 구성 및 방법(Resolution 24)의 검토 및 수정안 작성
WG B	의 장	K. Shotton (영국)
	처리안건	Study Group의 구조(Resolution 61) 검토 및 수정안 작성

WG A 와 B 가 담당한 이외의 CCIR-CCITT 협력관계, CCIR-IFRB 의 공동작업, CCIR terms of reference 안건들은 조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직접 토의 처리되었다. 이 안건들은 비교적 신속하고 쉽게 원칙적인 합의를 이루었고 이의 발언이 별로 없었으므로 이를 처리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나 시간 소모가 없었다.

의결사항

수차례의 회의를 거쳐 Resoulution 으로는 신규 6건, 개정5건, 삭제 2건이, Opinion 에는 신규2건, 삭제2건이 의결되었다. 다음은 세부적인 의결사항을 도표화한 것이다.

신규사항

구 분	관련문서	제 목
Resolution	plen 75+corr. 1	회기중 신규 또는 개정 권고의 승인
〃	plen 115	ISDN 을 위한 이동 및 고정위성통신과 HDTV 에서의 CCITT 와의 공동 연구
〃	plen 125	연구단의 재편성 검토
〃	plen 124	CCIR 업무에 대한 전략적인 검토와 계획
〃	plen 123	CCIR text 보급
〃	plen 76	CCITT 목적원문
Opinion	plen 105	CCIR terms of reference
〃	plen 102	결의 730을 WARC-92 의제로 검토

수정 및 삭제사항

구 분	수정사항	제 목
Resolution	24-6 ⇨ 24-7 (Plen 111)	CCIR 업무의 조직
〃	61-3 ⇨ 61-4 (Plen 122)	연구단 조직 및 의장단
〃	80 ⇨ 80-1 (Plen 104)	타기구와의 Liaison
〃	82-1 ⇨ 82-2 (Plen 103)	CCIR 과 CCITT 간의 협력
〃	83 ⇨ 83-1 (Plen 72+corr.1)	CCIR 과 IFRB 간의 협력
〃	26-1 삭제	
〃	27-1 삭제	
Opinion	63 삭제 ⇨ 신규 Resolution	
〃	65 삭제	

마지막으로 상기의결사항 중 주요의결 세가지에 대해 요약 설명하겠다.

첫째, 연구단 조직변경 사항이다. (Plen 122 참조)

기존의 SG2 와 SG7 을 SG7 로 통합하고, 기존 SG3을 종료, 그 잔여 과제를 SG9 에 이관하기로 했다. 한편 CMV 연구단을 용어관련 조정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서비스간 주파수 공유를 연구하기 위한 연구단(SG 12)을 신설했다.

둘째, CCIR 업무방법의 개선사항이다. (Plen 111 참조)

연구단(SG)산하에 Working Party(WP)와 Task Group(TG)을 두어 WP는 통상과제를 담당하고 TG는 긴급과제를 처리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회의기간 단축을 위해 연구단회의에서는 WP와 TG의 상정안을 검토만 할 뿐 초안제작성을 없기로 했다. 앞으로 WP나 TG의 활동에 많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급격한 기술발전과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회기중에도 권고를 승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신규결의)

회기중 해당권고를 승인하고자하는 제안은 만장일치되어야 하며, 3개월이내로 멤버의 회신을 받아 70%이상 찬성이면 권고는 승인·채택된다. 채택된 권고는 6개월이내에 권고로 발간되며 이렇게 채택된 권고는 다음 총회에 상정되어진다.

표준화 관련기관소개 / 일본

▶ 통신기술협회(TTC; Telecommunication Technology Committee)

설립년도 : 1985년 10월

설립목적 : - 일본의 통신 네트워크간의 표준 제정
 - 통신네트워크를 통한 터미널 장치 표준

주요활동 : - 통신네트워크간의 접속을 위한 프로토콜 및 표준개발
 - 표준화 활동지원을 위한 프로토콜과 표준의 연구 및 조사활동 수행
 - 표준의 보급확대